



: 2019-10-21

## 대전지방법원

### 제2행정부

### 판결

사 건 2017구합106786 교육부 감사결과 처리 지시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피 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9-10-21

## 2.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30.

## 주 문

- 가. 원고 A, B, C, D, G, H, I, J, K, L, M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를 모두 각 하한다.  
나.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 중 경고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9. 5. 원고 E, F에 대하여 한 재결 중 회수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 A, B, C, D, G, H, I, J, K, L, M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 E, F과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E, F이, 나머지는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D, G, H, I, J, K, L, M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교육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9. 5. 원고들에게 한 각 재결 및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7. 2. 26. N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경고, 주의, 시정(회수) 지시를 요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N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O'의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N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들이다.

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N대학교에 대한 '사립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2. 26. N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의 <지적사항> 표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처분요구사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의, 경고, 사업비 회수의 조치를 명하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지적사항>

연번	지적사항
4	<p><b>대학원생 국고지원금 중복지급</b></p> <p>○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P' 등 O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N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2. 26. P(Q 연구, 2014. 3. 1.~2015. 2. 28.)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물리학과 박사과정 R에게 O 2차연도</p>



	<p>“S”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인센티브 500천 원을 지급하고, “T” 이라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정치외교학과 U에게 6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고지원금(인센티브) 합계 1,100천 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5</p>	<p><b>연구성과급 지급 부적정</b></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1인당 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2015. 1. 29. N대학교 O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건설인재 양성사업단 “2014 사업단 참여교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에 따르면 SCI급 논문환산편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은 0편 지원금 없음, 1편 미만 1,500천 원, 1편 2,000천 원, 2편 2,500천 원, 3편 3,000천 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업단 2016. 7. 15.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V 운영 기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에 따르면 SCI급 논문 환산편수 평가기준으로 1편 25점, 2편 28점, 3편 이상 30점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b>【연구성과급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b> —————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 3. O 데이터공학팀 3차년도 성과급 8,000천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단장 원고 E에게 성과급 지급 한도 3,000천 원을 초과하여 3,20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li> <li>- 또한, 2015. 1. 29. O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혁신적 건설인재 양성사업단장 원고 F의 논문 환산편수가 0.2편에 불과한데도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2배인 3,000천 원을 지급하고, W의 논문 환산편수가 0.55편에 불과한데도 2,000천 원을 지급하여 성과급 합계 2,000천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li> </ul> <p><b>【연구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사항】</b>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대학교 O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혁신적 건설인재 양성사업단장 원고 H은 2016. 7. 15. 2016년 상반기 V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기여도 평가결과 65점인 5명의 동점자 중 교수 X와 교수 Y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ul> <p>※ 2016. 11. 15. 교수 X 및 교수 Y에게 각각 참여교수 인센티브 2,000천 원 사후 지급</p>



<b>6</b>	<p><b>홍보비 집행 부적정</b></p> <p>○ 「한국연구재단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등) 등으로 집행할 수 있고, 다만, O과 무관한 홍보 기념용품 제작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등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N대학교 교원 윤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N대학교 O BT(생명공학원) 사업단장 생명공학과 교수 원고 J은 2014. 4. 11. 자신이 회장(2014. 1. 1.~2014. 12. 31.)으로 재임 중인 (사)Z 학회지에 온라인지원서 접수 등 생명공학과 대학원 전형일정 게재 명목으로 후원금 성격의 홍보비 1,000천 원을 O 예산의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등 2014. 4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 (사)Z 학회지에 대학원생 모집 등 생명공학 대학원 전형일정 게재 명목으로 후원금 성격의 홍보비 합계 2,000천 원을 O 예산의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b>7</b>	<p><b>연구과제 참여 부적정</b></p> <p>○ 「교육부 O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제25조에 따르면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참여 제한기간 내에 있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고, 「한국연구재단 최종결과물 미제출과제 참여제한 시행 알림」에 따르면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하여 연구 참여제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도,</p> <p>- N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어중문과 교수 AA이 교육부 학술인문사회사업 중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AB - N대학교 소장 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하여 2014. 5. 29. AC재단으로부터 “2014. 5. 29.부터 2019. 5. 28.까지 연구참여를 제한한다” 는 내용의 참여제한을 통보받았음에도, O “AD” 사업단(연구기간 2014. 3. 1.~2015. 2. 28.)의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2014. 6. 6.부터 2014. 6. 9.까지 중국 AE 대학 국제학술대회 단기연수(연수비 1,835,700원)에 다녀오게 한 사실이 있음</p>

〈처분요구사항〉

원고	지위	처분 내용			사유
		주의	경고	회수	
1. A	교수	○			4. 대학원생 국고지원금 중복 지급



2. B	교수	○			
3. C	교수	○			
4. D	직원	○			
5. E	교수		○	○	5. 연구성과금 지급 부적정 ①
6. F	교수		○	○	
7. G	직원	○			
8. H	교수		○		5. 연구성과금 지급 부적정 ②
9. I	직원		○		5. 연구성과금 지급 부적정 ①, ②
10. J	교수		○		6. 홍보비 집행 부적정
11. K	교수	○			
12. L	교수		○		7.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13. M	직원	○			5. 연구성과금 지급 부적정 ① 6. 홍보비 집행 부적정 7.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5.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5. 피고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N대학교 총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N대학교 총장이 위 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 비로소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차 N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행정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N대학교 총장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불이익



을 입게 되는 것은 N대학교 총장의 실제 조치의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원고들은 위 처분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룰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바, 위 재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는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

#### 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

##### (1) 연번 4번 '국고지원금 중복 지급'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 A, B, C, D이 연구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R, U에 대하여 연구장학금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그 지급액이 크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인 주의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연번 5번 '연구성과급 지급 부적정'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사업단 참여교수인 원고 E, F과 W에 대하여 성과급이 초과 지급된 것은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220만 원에 불과하며, N대학교의 교원이 경고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사업단장인 원고 E, F에 대한 경고 처분 명령과 사업단의 행정직원인 원고 M, G, I에 대한 주의 처분 명령은 위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한편, 원고 I은 현재 N대학교에서 퇴직하여 N대학교 총장이 더 이상 경고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 H이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추후 위 미지급 성과급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 H에 대하여 굳이 경고 처분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H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 부분도 결국 위법하다.

(3) 연번 6번 '홍보비 집행 부적정'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 J, K, M가 2014. 4. 9. 및 2014. 9. 7. 사업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생명공학과 대학원 모집공고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O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는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비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위 모집공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도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교육부장관이 N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들어 위 원고들에 대하여 경고, 주의, 사업비 회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4) 연번 7번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AC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고, 법령상 권한 없이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AC재단의 참여제한 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AA, AF 교수의 O단의 연구과제 참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 교육부장관이 이 부분 처분사유를 들어 N대학교 총장에게 원고 M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요구한 부분도 위법하다.

###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4.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N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일 뿐 그 자체로 N대학교 총장이나 N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률상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N대학교 총장이고, 원고들은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N대학교 총장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근거법규

이 사건 처분은 N대학교 총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N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교원 또는 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주의, 경고 및 부적정 집행 자금에 대한 회수 명령을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이하 N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것을 명령한 부분을 '주의·경고 명령 부분'이라 하고, 원고 E, F에 대하여 부적정 집행 사업비를 회수할 것을 명령한 부분을 '회수 명령 부분'이라 한다), 피고 교육부장관은 그 처분의 근거법규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7조, 사립학교법 제70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3조 등을 들고 있다 (피고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의 근거법규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면서 뒤늦게 위와 같은 규정들이 처분의 근거법규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피고 교육부장관이 주장하는 법규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



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술진흥법 제17조 제2항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70조는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교육부장관이 주장하는 이들 법규 중에서, 학술진흥법 제17조 제2항은 대학의 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피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 대하여 사업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사립학교법 제70조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술진흥법과 사립학교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으로 '주의·경고 명령 부분'과 '회수 명령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과 공공감사법이 이들 각각에 대한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시정이나 변경"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정'(是正)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잘못 집행된 연구비 등의 회수를 명하는 회수명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자에 대한 '주의', '경고'는 위와 같은 '시정'의 문언적 의미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의·경고 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이 처분의 직접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고 교육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감사결과에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조치의 내용에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주의·경고·회수 명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공감사법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전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규가 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회수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과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이, '주의·경고 명령 부분'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만이 그 처분의 직접 근거법규가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법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들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60조는 제1항은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학교의 장 등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64조 제3항 제3호는 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 제23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훈령인 「교육부 감사규정」 제20조도 마찬가지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피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피고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행한 감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N대학교 총장은 곧바로 고등교육법과 공공감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N대학교 총장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 내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의 상대방인 N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라 함은 근거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써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



어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2) 원고 E, F에 대한 회수명령 부분에 관하여 이들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3항 제3호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즉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법규에는 근거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써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이 인용하고 있는 '교육 관계 법령'에는 사립학교법은 물론 원고 E, F에 대한 처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도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산학협력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등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E, F에 대한 회수명령에 대하여 이들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대우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산학협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연구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미 지급받은 연구성과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박탈당하지 아니할 이익도 보호하고 있거나, 적어도 산학협력법이 산업교원의 대우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에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으로서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소속 교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이 스스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속 교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 대하여 명령한 불이익 조치의 상대방인 교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피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교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교육부장관의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물론 학교의 장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소송절차에서 불이익한 조치의 상대방인 교원이 학교의 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의 권리구제 가부가 학교의 장의 소 제기 및 그 유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만약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원으로서 학교의 장이 현실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의 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학교의 장 등'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소송 형태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에 대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현대적인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적합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하력(威嚇力)을 바탕으로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교원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교원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원고적격의 법리를 방패막이 삼아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원인이 된 자신의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소송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원고들에 대한 주의·경고 명령 부분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육부장관이 N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주의·경고'를 명령한 부분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만이 그 처분의 직접 근거법규가 된다고 할 것인데, 공공감사법 제2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통보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결과 통보대로 이행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의 정당성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후 그 판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면 공공감사법이 정한 의무를 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감사법은 고등교육법 제64조 제3항 제3호,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같이 대상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주의·경고 명령의 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실제 주의·경고 여부는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N대학교 총장의 주의·경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친 다음, N대학교 총장이 이들에 대한 주의·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 피고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주



의·경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앞서 본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 부분과는 달리 주의·경고 명령 부분에 있어서 피고 교육부장관의 처분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그 처분의 상대방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거나 또는 주의·경고를 받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공공감사법 또는 관련 법규가 원고들로 하여금 주의·경고등을 받지 아니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중 주의·경고 명령 부분의 효력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회수 명령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 중 위 회수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 중 위 회수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 5.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 나. 판단

(1)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모두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 전부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E, F에 대한 회수 명령 부분은 위 원고들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 E, F은 회수 명령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E, F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원고 E, F에 대한 회수 명령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원고들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회수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재결 부분은 이 사건 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회수 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



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재결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원고 E, F의 회수 명령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재결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결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6.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회수 명령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성과급은 1인당 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관하여 N대학교에서 제정한 「2014 사업단 참여교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르면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환산편수 0편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1편 미만은 150만 원, 1편은 200만 원, 2편은 250만 원, 3편은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원고 E, F이 2016. 3. 3. 사업단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당시 원고 E에게는 320만 원, 당시 논문 환산편수가 0.2편이었던 원고 F에게는 300만 원, 논문 환산편수가 0.55편이었던 W에게는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위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에 대하여는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성과급 한도인 3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초과한 성과급이, 원고 F에 대하여는 「2014 사업단 참여교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정한 논문 환산편수 1편 미만의 성과급 한도인 1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초과한 성과급이, W에 대하여는



여는 같은 기준에 따른 성과급 한도인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초과한 성과급이 각각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 E, F은 2016. 3. 3. 성과급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당시 합계 220만 원 (= 2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의 사업비를 사업비 집행기준에 위반하여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교육부장관이 위 초과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회수 명령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 청구 중 원고 E, F의 회수 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재결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 F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 E, F의 경고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소와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E, F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회수 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019-10-21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박지은

            판사      윤성진



## 관련 법령

### □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的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 □ 학술진흥법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교육부 감사규정」

#####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19-10-21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